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693

발의연월일: 2020. 11. 24.

발 의 자:서영교·김영배·김민철

한병도・송재호・김병기

이개호 · 오영환 · 강득구

홍기원 · 김승원 · 신정훈

김주영・이광재・이수진(비)

의원(15인)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지방자치단 체에서는 위 법률을 근거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 성하거나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또는 취약계층 지원 등의 용도로 공 유재산을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참여 및 전문성 확보,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개발하기위한 근거가 미흡함.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와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 및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확립하며, 기타 불명확·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제10조)

현행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년 단위의 계획으로 장기적·체계적인 공유재산의 관리·개발에 한계가 있어, 5년 단위 이상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공유재산의 관리정책이 기존 보존·유지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 활용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로, 「국유재산법」의 국유재산 관리기금과 같이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개발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유재산정책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8조의3)

공유재산 관련 주요정책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협의·조정할 수 있는 기구 마련이 필요함.

라. 사용허가·대부 시 제한경쟁 도입 및 전대 금지 규정 신설(안 제20조, 제29조)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할 경우 지역기업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국유재산법」과 같이 현행 일반입찰 또는 지명경쟁방식에 제한경쟁 방식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특정인의 독점적 사용등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부를 받은자는 그 일반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신설할 필요가 있음.

마. 소액 사용료·대부료 일괄징수 및 분할납부 담보 강화(안 제22조, 제32조)

현행 법률에서 사용료·대부료는 금액의 규모와 무관하게 매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의 소지가 있고, 분할납부할 경우그 잔액에 대한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보험 가입에 강제성이 없어 담보 확보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유재산법」과 같이 소액 사용료·대부료는 일괄징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성과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분할납부할 경우 그 잔액에 대한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자함.

바. 상호점유에 따른 대부료 감면(안 제34조)

주민편의성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재산과 타인의 재산을 상호 점유하는 경우 「국유재산법」과 같이 대부료의 상계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 위탁개발에 따른 결과 공개 근거 마련(안 제43조의3)

공유재산 위탁개발은 대규모 자본과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위탁개발에 따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아. 수탁기관에 연체료·변상금 징수권한 부여(안 제80조, 제81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과 같이 수탁기관도 연체료·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자. 변상금 체납액 징수 근거 합리화(안 제97조)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등을 규정하는 「지방행정제재금·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 2 020. 3.24. 법률 제17091호)에 따라 변상금 징수절차 등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요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안 제11조, 제14조, 제28조, 제36조, 제76조, 제78조)
 - 1) 공유재산의 용도변경·폐지 사유
 - 2) 공유재산 관리사무 위임에 따른 귀속금 근거
 - 3) 공유재산에 대한 사권설정
 - 4) 매각 재산에 대한 특약등기
 - 5) 불용품의 매각방법

6) 불용품의 양여 요건

카. 기타 불명확·불합리한 규정 정비

- 1)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은 현물거래·유상매입 등이 가능한 재산의 성격이 강하여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안 제4조).
- 2) 재산관리관 외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15조).
- 3) 「국유재산법」과 같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대부 기간의 갱신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안 제21조, 제31조).
- 4) 국가와 같이 물품 정기재물조사를 2년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안 제60조).
- 5) 물품 재물조사 결과에 대해 국가와 같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도록 함(안 제60조, 제88조).
- 6) 개별구매가 어려운 물품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국가와 같이 물품을 그 종류와 무관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

법률 제 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사용·수익허가"란"을 "'사용허가"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의2 중 "관하여"를 "관해서"로, "있는 경우 외에는"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3조 중 "법령을 준수하고"를 "법령 및"으로, "주의로써"를 "주의의무를 준수하며"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

제5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를 "법령·조례·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 것인 경우"를 "아니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산에 대하여"를 "재산을"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을 "하는"으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0조를 제10조의2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0조의2(종전의 제10조)의 제목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전단중 "예산을 지방의회에서"를 "지방의회에서 예산을"로, "매년"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로,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를 "(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로, "받아야 한다"를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

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을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로, "지방의회"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46조"를 "「지방자치법」 제4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계획에"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로,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한다.

-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 2.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 4.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공유재산이 다음"으로,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 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 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3.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 단서 중 "공용 또는 공공용"을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으 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도랑·교량"을 "도랑·다리"로, "축조하지 못한다"를 "축조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공유재산에 관한"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으로, "처리하는"을 "관리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제10조"를 "제10조 및 제10조의2"로, "관리계획"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제34조에 따라"를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관리·운영 및 처분"을 "관리·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호선하여 선정한다"를 "호선한다"로 한다.

-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제18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2장에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공유재산관리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3.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 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
 - 4.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수입금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 에 따른 수입금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 2. 일반재산의 관리·처분·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 3.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위탁에 필 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 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 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 ④ 제2항제3호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귀속비율에 대한 사항 및 그 밖에 기금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의3(공유재산정책협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정책협 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2.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
 -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9인

-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인
- 3.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그 밖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를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한다"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을 "사용허가를 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명경쟁"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하며, 같은 항제2호 중 "제7조제2항 단서"를 "제7조제2항제1호"로, "사용·수익을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용·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용·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용·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용·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을 "인정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사용·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허가기간"을 "사용허가기간"으로, "사용·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사용허가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사용허가기 간은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7조제2항 각 호"를 "제7 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는 허가 기간"을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으로, "사용·수익허가를"을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로 하며, 같은 항 후 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 항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조제2항 각 호"를 "제7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허가기간"을 "사용허가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허가기 간"을 "사용허가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사용·수익허가기간"을 각각 "사용허가기간"으로 하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을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으로, "산출방법"을 "계산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일정한 금액"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를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 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1항 중 "산정된"을 "계산된"으로, "감액(減額)할"을 "감액(減額) 조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출"을 "계산"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을 허가할"을 "사용허가를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제2항 단서"를 "제7조제2항제1호"로, "사용·수익을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용·수익을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수익하가"를 "사용허가"로 하다.

제25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를 "(사용허가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용·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을 "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그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수익을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을 "해당"으로,

"손실"을 "그 취소로 손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6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관리 및 처분)"을 "(관리·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사권"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권"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재산의 사권설정,"을 "일반재산의"로 한다.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구분지상 권을 설정하는 경우
-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 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29조제1항 본문 중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을 "일반입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명경쟁"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그 일반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대부계약"을 "제1항에 따른 대

부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부계약"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중 "산출방법"을 "계산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일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를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대부기간 중의 대부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대부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3조제1항 중 "감액"을 "감액 조정"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는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5조의 제목 "(대부계약의 해지 등)"을 "(대부계약의 해지·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 전의 제3호) 중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을 "대부받은"으로 한다.

-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제3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 제목 "(매각계약의 해지 등)"을 "(매각계약의 해지·해제)"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를 "자치구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갈음할"을 "대신하여"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일반재산의 신탁)"을 "(신탁개발)"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신탁할"을 "신탁하여 개발할"로 한다.

제43조의3의 제목 "(위탁재산의 개발)"을 "(위탁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제43조의2에 따른 수탁기관에 해당 일반재산의"로, "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있다"를 "을 위탁할 수 있다"로 하

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개발에 따른 사업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⑦ 위탁개발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수탁 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4를 삭제한다.

제43조의5의 제목 "(지식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을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소관 물품을 사용 및 처분할 때 그"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처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따라"를 "따라서"로, "분류할"을 "이를 분류할"로 한다.

제50조 중 "이에"를 "물품에"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관리에 관한"을 "관리"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을 "필요하면"으로, "사용에 관한"을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에 관한"을 "사용"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물품관리의"를 "물품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을 때에는"을 각각 "없으면"으로 한다.

제56조 중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로 한다.

제57조제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를 "필요하면 제1항에"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을 "변경"으로 한다.

제59조 중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을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대통령령"을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을 "1년마다"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를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한다.

제63조 중 "물품의 효율적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을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으로 한다.

제66조 중 "관리에 관한"을 "관리"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 제한)"을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물품관리에관한"을 "물품의 관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을 "포함된 물품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로,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을 "범위에서 물품의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물품의 경우필요하다고 인정할때마다취득에"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때에는"을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으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수(檢受)를"을 "검사와 검수를"로한다.

제69조 단서 중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를 "부적당하거나"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있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있으면"으로 한다.

제72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있다고 인정하면"을 "있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되는 경우"를 "인정되면"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물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것이거나"를 "물품 또는"으로,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을 "없는 물품은"으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정방법"을 "계산방법"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본문 중 "있을 때에는"을 "있으면"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물품에 대하여는"을 "물품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부적합한 물품"으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을 "물품은"으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매각)"을 "(물품의 매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물품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것에 대하여는"을 "것은"으로 한다.

② 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77조 본문 중 "있을 때에는"을 "있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불용품에 대하여는"을 "불용품은"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용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 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을 그 용도에 따라 양 여하는 경우
- 2. 민방위용, 재난재해 대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을 그 목적에 맞게 양여하는 경우
- 3.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되지 않거나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될 가능성 이 없는 물품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 4.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 5. 제7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제76조제3항에 따른 매각되지 않은 물품인 경우
- 7.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인 경우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여하는 경우
- ② 그 밖에 불용품 양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1항 중 "같은 종류의 물품"을 "물품"으로 한다.

제80조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 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으 로,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한다"로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무단점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단점유를 한 자"를 "무단점유자"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자연감모율에 관하여는"을 "자연감모율은"으로 한다. 제87조 중 "의하지"를 "따르지"로 한다.

제88조를 삭제한다.

제90조의 제목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물품관리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중 "물품관리에 관한"을 "물품관리"로, "물품의 관리에 관하 여"를 "물푺관리를"로 한다.

제91조 중 "「지방재정법」 제74조에 따른 도급경비로서"를 "「지방회계법」 제7조에 따른 일상경비등으로"로 한다.

제92조 중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현재액"으로 한다.

제93조 중 "갈음"을 "대신"으로 한다.

제94조의2제2항 중 "조례 또는 규칙으로"를 "조례로"로 한다.

제97조제2항 중 "연체료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을 "연체료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당 지 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 과 교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제한경쟁의 방법을 통하여 사용허가 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다.
- 제4조(사용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및 제31 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사용료 및 대부료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6조(계약의 방법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한경쟁의 방법을 통하여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7조(위탁개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위탁개발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8조(연체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0조 및 제81조제1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 무를 위탁받은 자가 연체료 및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제1조(목적)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u>도모함</u> 을 목적으로 한다.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u>관리·처분하는 것</u>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u>"사용·수익허가"란</u> 제5조제2	7. <u>"사용허가"란</u>
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	
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을 말한다.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
	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u>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u>
	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
	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
	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
	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 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u>있는 경우 외에는</u>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한 관리자의 주의로 서우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신 설>

② (생 략)② (현행과 같음)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u>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u>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
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
<u>을 말한다.</u>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해서
<u>없으면</u>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
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u>법령 및</u>
<u> 며</u>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1. ~ 8. (현행과 같음)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
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
② (현행과 같음)
레트코/코스레지시 그러리 조리)

- ① (생략)
-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 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 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생략)

②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사업용 및
사업용 및
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4
법령·조례·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기부채납)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u>아니</u>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u>재산</u>
 <u>에 대하여</u> 기부자, 그 상속
 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u>그 재산을 기</u>
 부하는 경우

2. (생략)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기부채납)	1	(현행과	· 같
승)			
2			
		<u>0</u> }	니한
경우			
· 			
1			계사
· 			<u>/៕ </u>
<u> </u>			
			-11.
			<u>하는</u>
	^ \		
2. (현행과 같음	_ ,	1 21	
제8조(사권설정			- 제
한)			
		이 조를	적
용하지 아니한	<u>다</u> .		

<신 설>

-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 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 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 계획
 -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

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 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 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 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 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 한 사항

- 4.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 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 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 |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의회에서 예산을----------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u>작</u> 40일 전까지 <u>지방의회</u>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한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 ④ <u>관리계획에</u>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u>범위, 관리계획의</u> <u>작성기준 및 변경기준</u>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⑤ <u>관리계획</u>에 관하여 지방의 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 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 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저지 기방자치단체의 장은 <u>다음</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u>

회계연도 개시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의회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자
<u> </u>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범위 등
필요한 사항
⑤ 공유재산관리계획
네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
ll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 <u>공유재산</u>
ll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 <u>공유재산</u> <u>이 다음</u>
ll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 <u>공유재산</u>
ll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 <u>공유재산</u> <u>이 다음</u>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 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신 설>

<신 설>

2. (생 략)

-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 기 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 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

-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 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 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 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 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3.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u>4.</u> (현행 제2호와 샅음)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u> </u>
<u>공용재산</u> 또	는 공
<u> 공용재산</u>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 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 지의 위임) ① · ② (생 략)
 - ③ 제1항에 따라 <u>위임받은 공</u> 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에 필 요한 비용의 처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① 재산관리관이나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처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다만,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

	<u>다리</u>
	<u>축</u> 조할 수 없다.
	예외로 한다.
제	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
	의 위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특별시장·광역</u>
	<u>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u>
	및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
	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
	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
	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
	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u>는 금액을 해당 시·군 및 자치</u>
	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	15조(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
	한) ①
	<u>공유재산을 관리하는</u>
	<u>관리하는</u>
	예외로

지 아니하다.

② (생략)

<신 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하다.
-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 2. (생 략)
-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 원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현행 과 같음)

- 1. 제10조 및 제10조의2---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 재산관리계획-----
 - <u>2. 제11조에 따라</u>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 는 경우
 -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 려는 경우
 - 4. (현행 제2호와 같음)
- <u>5.</u> ------제34조 및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하는 경우

-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u>관리·운</u> <u>영 및 처분</u> 등에 대하여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 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 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 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 1. (생략)
-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 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 3. (생략)
- ④ (생 략)

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 지 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 비 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 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u>6.</u>	관리·처
<u> </u>	
③	
1. (현행과 같음)	
2	
<u>ठ</u> ॅ	<u>선한다</u>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
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	난한 경
비 부담)	
· · · · · /	
	

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 <신 설> 예외로 한다.

- 제18조의2(공유재산관리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 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 로부터의 전입금
 - 3.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
 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
 - 4.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 리·처분 수입금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기금의관리·운용에 따른 수입금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

한다.

- 1.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 2. 일반재산의 관리·처분·개발 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 3.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위 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 탁료 등의 지출
- 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로의 전출금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 ④ 제2항제3호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귀속비 율에 대한 사항 및 그 밖에 기 금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공유재산정책협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라 한다)를 둔다.

<신 설>

- 1.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 2.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
-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 전부차관이 되고, 협의회의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 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9인
-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인
- 3.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 ④ 그 밖에 협의회 구성과 운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 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 탁 또는 <u>대물변제하거나 출자</u> 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u> <u>니하다</u>.

- 1. ~ 3. (생략)
- ② ~ ④ (생 략)
-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 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 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u>사용·수익을 허가하려</u>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지명경쟁</u>에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 1. (생략)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
<u>상이 되지 아니하며</u>
2 41
<u>예외로</u>
<u>한다</u>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허가) ①
· · · · · · · · · · · · · · · · · · ·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를 하려면
제한경쟁 또
<u> </u>
<u>L /\\\\\\\\\\\\\\\\\\\\\\\\\\\\\\\\\\\\</u>
,
1. (현행과 같음)

-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u>사용·수익의</u> <u>허가</u>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 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 항에 따라 <u>사용·수익의 허가</u>를 받은 자가 <u>제7조제2항 단서</u>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 익하게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 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 에 어려움이 있다고 <u>인정하는</u>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

2. <u>제7조제2항제1호</u>
<u>사용허가</u>
③사용허가
<u>사용허가</u>
<u>제7조제2항제1호</u>
,
4
인정되면
,
⑤사용허가
사용허가기간
사용

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 로 반환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 경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 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 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u>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u>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선 신설>

<u>허가</u>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사용허가기간은 사용
허가
 <u>제7조제2항제1호</u>
· ②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
<u>제1항 본문의 사용</u>
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
<u>허가를</u>
<u>삭제></u> <u>다만, 수의의 방법으로</u>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
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 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사용·</u>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허가기간</u>을 연장할 수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u>허가기</u>간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 2. (생략)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u>사</u>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u>사용·수익허가기간</u>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u>사용·수익허가기간</u>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u>사용·수익허가기간</u>의 갱신 또는 <u>사용·수익허가기간</u>의 연

③
<u>사용허가</u>
제7조제2
항제1호
4 <u>٨ </u>
<u>허가</u>
사용허가기간
<u>사용허가</u>
<u>사용허가</u> <u>기간</u>
<u>기간</u>
<u>기간</u>
기간
기간 1. · 2. (현행과 같음)
기간 1.・2. (현행과 같음) ⑤ <u>사</u>
기간 1. · 2. (현행과 같음) (5)
기간
기간
기간 1. · 2. (현행과 같음) (5)

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 저의 장은 <u>행정재산의 사용·수익</u>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u>산</u>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신 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 부하게 하는 경우 <u>일정한 금액</u>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 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 로 하는 <u>이행보증보험을 체결</u> 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의 조정) ① 지방자 저

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

··
메2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u></u> 剤
<u> 산방법</u>
<u>다만, 연간 사용료가</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
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3
<u>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금액</u>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
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 에 기용되기기가 주어 기용되
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
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
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 환하지 아니한다.
한의계 기위한기.
 세23조(사용료의 조정) ①

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할수 있다.

- ② 일반재산이 용도 변경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 료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u>사</u> 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 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 를 면제할 수 있다.
 - 1. (생략)
 - 2. <u>제7조제2항 단서</u>에 따라 행 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 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

<u>계산된</u>
<u>.</u>
②
<u>계산</u>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u>\lambda</u>
용허가를 할
1. (현행과 같음)
2. <u>제7조제2항제1호</u>

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u>사용·수</u> 익을 허가하는 경우

- 3. (생략)
-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u>사용·수익을 허가</u>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② (생 략)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재산의 <u>사용·수익허가</u>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 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 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 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 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u>사용·</u>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u>사용·수익의 허가</u>를 받은 행

사용
<u>허가</u>
3. (현행과 같음)
4
제 9 원 기
<u>사용허가</u>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허가
<u> </u>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λ] Ġ
<u>사용</u>
<u>허가</u>
1. <u>사용허가</u>

정재산을	제:	20조제3항	을	위
반하여 다	른	사람에게	사-	용.
수익하게	항	경우		

- 2. (생략)
- 3. <u>지방자치단체의 장</u>의 승인 없이 <u>사용·수익의 허가를 받</u> <u>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u> 한 경우
-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그 허가</u>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5. (생략)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사용·</u> 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 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 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u>그 취소로</u>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 게 <u>손실</u>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

2. (현행과 같음)	
3. <u>사용허가를 받은 행정</u> ス	<u> </u> 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 <u>변경</u>
4	
<u>사용허가</u>	
5. (현행과 같음)	
2	- <u>사용</u>
허가	
3	-해당
그 취소로 손실	
4	
사-	용허가

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 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 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 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6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 산의 <u>사용·수익허가</u>를 취소하 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관리 및 처분) ① 일반재 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하거나 <u>사권</u>을 설정할 수 있으 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 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 제를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26조(청문)
<u>사용허가</u>
제28조 <u>(관리·처분)</u> ①
<u>다음 각 호에 따라 사권</u>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 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

② <u>일반재산의 사권설정</u>, 현물 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 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제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생략)

<신 설>

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조
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
ㅡㅡㅡ 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일반재산의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입찰
<u> </u>
·
게칭건게 ㄸ느 기며건게
<u>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u>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그 일반재산을 다른 자에
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

제31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저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 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 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 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 <u>신설</u>>

③ ~ ⑤ (생 략)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 저 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 를 징수한다. <단서 신설>

<u>다.</u>
세31조(대부기간) ①
예외로 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u>
에 따른 대부기간의 범위 내에
<u>서 대부계약</u> .
<후단 삭제> 다만, 수의계약으
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
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세32조(대부료) ①
<u>계산방법</u>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
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이다

② (생략)

<신 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 부하게 하는 경우 <u>일정한 금액</u>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 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 로 하는 <u>이행보증보험을 체결</u> 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의 조정) ①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 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 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 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제32조제1 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 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u> </u>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통령령으로
<u>정하는 금액</u>
<u>이행보증</u>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
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
에 대부기간 중의 대부료가 증
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대부료
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
지 아니한다.
제33조(대부료의 조정) ①
감액 조정

- ② (생략)
-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생략)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 조에도 불구하고 <u>외국인투자기</u> 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생 략)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수 있다.

1. • 2.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현행
과 같음)
②
대통령령
(전체가 가야)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
유자는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
를 감면할 수 있다.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해제) ①
<u>.</u>

1. • 2. (현행과 같음)

3. <u>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u> <u>거나, 대부받은</u>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4. • 5. (생략)

②・③ (생 략)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② (생 략)

<신 설>

- 제38조<u>(매각계약의 해지 등)</u> ① ~ ③ (생 략)
- 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u>4.</u> <u>대부받은</u>
<u>5.·6.</u>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
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38
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
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u>한다.</u>
제38조 <u>(매각계약의 해지·해제)</u>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양여) ①
1
<u> 자치구에서</u>

-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생략)
-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u>갈음할</u>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 4. 5. (생략)
- ② ③ (생 략)
- 제42조(일반재산의 신탁) ① 일반 재산(토지와 그 정착물로 한정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 자에게 신탁할 수 있다.
 - ② ~ ⑤ (생 략)
- 제43조의3(위탁재산의 개발) ① 7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 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발[「건축법」 제2 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낼수 있다.
 - ② ~ ⑤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5 <u>대신하여</u>
4.·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신탁개발) ①
<u>신탁하여 개발할</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의3(위탁개발) ① 지방자치
<u>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u> 적인 활용을 위하여 제43조의2
에 따른 수탁기관에 해당 일반
<u>재산의</u>
을 위탁할 수
<u>있다</u> .
② ~ ⑤ (혀해과 같은)

<신 설>

제43조의4(수탁기관의 보수 등)
제43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재
산의 개발로 발생한 수익의 지
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수탁기
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5(지식재산의 사용·수익 저 허가 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제20조제3항 본문 및 제3 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개발에 따른 사업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 야 한다.
- ① 위탁개발에 따라 발생한 수 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삭 제>

세43조의5(지식재산의	사용허가
<u>=</u>) ①	사용허가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제4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 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 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 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물품의 분류) ① 지방자치 제49조(물품의 분류) ① -----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을 사용 ----- 소관에 속하는 및 처분할 때 그 적정성을 도 물품의 관리·처분의-----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 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 별·성질별·기관별·품목별로 분 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류는 지방자치단 체의 예산에서 정한 물품 관계 경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 유로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따 라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라서-----따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분류할-----.

③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제50조(출자 등의 금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물품을 출 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u>이에</u> 사 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52조(물품관리관)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u>관리</u> <u>에 관한</u>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 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 관리관(제55조제1항에 따라 물 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 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 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 명령에 관한 사무는 <u>제외한다</u>) 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4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 관은 <u>필요한 경우에는</u>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

제50조(출자 등의 금지)
<u>물품에</u> -
제52조(물품관리관) ①
<u>관리</u> -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①
제외한다.
<u>이하 같다</u>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물품운용관) ① 필요하면

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u>사용에 관한</u>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u>사용</u><u>에 관한</u>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제55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물품</u> 관리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 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 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 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u>없을 때에는</u>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u>없을</u> <u>때에는</u>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

	- <u>사용</u> -
②	<u>사용</u>
제55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①	<u>물품</u>
<u>관리</u>	
2	
<u>없으</u>	<u>면</u>
	~]
	<u>없으면</u>

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할 수 있	
다.	
제56조(물품관리에 관한 정보공	제56조(물품관리에 관한 정보공
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	유 등)
자치단체의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물	
품관리기준 등에 관한 정보 등	<u>정보</u>
을 조달청장과 공유하는 등 상	
호 협조할 수 있다.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	
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	
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의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u>	예외로 한
<u>다</u> .	<u>다</u>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② <u>필요하면</u>
<u>에</u> 따른 수급관리계획을 <u>변경</u>	<u>제1항에</u>
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	
<u>였을 때에는 변경</u> 할 수 있다.	<u>변경</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재고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제59조(재고관리)

장은 사용 빈도가 높거나 재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한다.

제60조(재물조사 등)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u>2년마다 정기</u> 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수시로 재물조사를 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보고하여야한다.

제63조(물품 소관의 전환) 물품관 리관은 물품의 효율적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지방자 치단체의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
 는 물품의 경우에는
<u>.</u>
제60조(재물조사 등) ①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
<u>여 대통령령1년마다</u>
<u>필요한 경우에는</u> -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
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
이 발견되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63조(물품 소관의 전환)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7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 제한) ① 물품관리에 관한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취급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68조(취득) ① 물품관리관은 제57조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
관리
<u> </u>
· 제67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
위제한) ① 물품의 관리
<u>예외로 한다</u> .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취득) ①
포함된 물품의 경우 계약담당공
<u>무원에게범위에서</u>
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물품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취득에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 술자의 검수(檢受)를 받지 아니

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제69조(보관의 원칙) 물품은 언제 든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의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사용 또는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 중인 물품(제73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의하여 반납된 물품은 제외한다) 중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물품

<u>.</u>
③
<u>검사와 검수를</u>
제69조(보관의 원칙)
, , , , , , , , , , , , , , , , , , , ,
<u>부적당하거나</u>
경우는
<u> </u>
제71조(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
의 처리) ①
<u>따라</u>
<u>있으면</u>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의	
하여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u>에는</u>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그	
밖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72조(사용) 물품관리관은 물품	 ス
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	
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용 목	
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에게 알려야 하고,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	
우에는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	
원(이하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	
원의 요청에 따라 출납명령을	
한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u>	
<u>다</u> .	
제73조(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ス
①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사용공	
무원은 사용 중인 물품 중 사	

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	
	②	
		- <u>있으면</u>
제	72조(사용)	
		<u>예외로 한</u>
	<u>다</u> .	
제	73조(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①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 가 필요한 물품이 <u>있다고 인정</u> <u>하면</u>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 이라는 것이 <u>인정되는 경우</u> 물 품운용관이나 물품사용공무원 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 야 한다.

제74조(대부) ① 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u>것이거나</u> 대부하 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 는 사무에 지장이 <u>없다고 인정</u> 하는 <u>것에 대하여는</u> 대부할 수 있다.

- ② (생 략)
- ③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 대부료의 산정방법, 대부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u>있으면</u>
·
②
<u>인정되면</u>
<u>.</u>
· 제74조(대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u> 장물품 또는</u>
없는 물품은
② (현행과 같음)
③
계산방법
<u> </u>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수 없는 물품이 <u>있을 때에는</u>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u>물품에 대</u> 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 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 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 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 품"이라 한다) 중 매각하는 것 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76조(<u>매각</u>) ① <u>물품은</u>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 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u><신 설></u>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u>것에 대하여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의

<u>있으면</u>
<u>.</u>
물품은
<u>.</u>
②
<u> 부적합한 물품</u>
물품은
제76조 <u>(물품의 매각)</u> ① <u>지방자치</u>
단체의 장은
② 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
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u>있다.</u>
<u>③</u>
<u></u> 것은

특례를 둘 수 있다.

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지방 지자 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 중 제 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 또는 매각 등에 의하여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불용품이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78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 저 지단체의 장은 <u>용도가 지정된</u>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할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u>있으면</u>
<u></u>
<u>불용품은</u>
<u>.</u>
제78조(불용품의 양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
<u>용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u> <u>상에게</u>
 1.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
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을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
<u>우</u> 2. 민방위용, 재난재해 대비용

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u><</u>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 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 득한 물품을 그 목적에 맞게 양여하는 경우

- 3.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되지 않 거나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 4.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 5. 제7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 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 6. 제76조제3항에 따른 매각되 지 않은 물품인 경우
- 7.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인 경우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여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 ② 그 밖에 불용품 양여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 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 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 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 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국가보훈처장 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 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 다.

제7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u>같은 종류의</u>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② (생략)

세79조(교환) ①	
	물품
② (현행과 같음)	

제80조(연체료의 징수) <u>지방자치</u> 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u>징수할</u>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 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 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 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 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 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

제80조(연체료의 징수) <u>지방자치</u>
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u>징수한다</u>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u>지방자</u>
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
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
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무단
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무단

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무단</u>점유를 한 자의 무단점유 경위(經緯) 및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86조(물품의 자연감모) ① (생략)

②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품명 및 <u>자</u>연감모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물품의 공급) 물품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사·제조, 그 밖의 계약자에게 공급

1.•2. (현행과 같음)
②무단
 <u>점유자</u>
,
③ (현행과 같음)
제86조(물품의 자연감모) ① (현
행과 같음)
②
자
<u> 연감모율은</u>
제87조(물품의 공급)
<u>따르지</u>

할 수 없다.

제88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0조제 1항에 따른 재물조사의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 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제90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지 제90조(물품관리 검사) -----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 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 여야 하고, 물품관리관·물품운 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와 그 밖에 물품관 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 사하여야 한다.

제91조(일부 물품의 적용 배제) 「지방재정법」 제74조에 따른 도급경비로서 취득한 물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_	_	_	_	_	_	_	_	_	_	_	_
<	(/	싴	_		7	저		>			

·, <u> </u>				_	
<u>£</u>	물품관	:리-			
				근	
		古	<u> 단디</u>	<u>글</u>	
제91조(일·		무품.	의	적용	배제)
_「지방호	·	·	·	, -	, ,
<u>일</u> 상경비]등으	로-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 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 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 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 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재산관리관, 물품관 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회계관계공 무원에 대한 사무의 위임은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 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 써 갈음할 수 있다.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 7 영기준)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

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

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
황의 공개 등)
<u>현재액</u>
제9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u>대신</u>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
영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사항을 <u>조례 또는 규칙으로</u>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 저용) ① (생 략)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 및 제81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수 있다.

<신 설>

조례로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
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연체료를
<u>.</u>
③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
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u> 징수한다.</u>